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4월 2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개 정 이 유

「지역보건법」 제11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사항의 규정을 통하여, 아동·청소년기의 가장 빈발하는 질환인 구강질환에 대해 지역 치과의원을 등록하여 예방중심의 계속관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치과주치의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액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3. 의 견 제 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6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참조: 보건의원 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2(상도동 17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탁과(전화 : 820-9692, FAX : 820-94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구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 시설”에 등록된 아동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아동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저소득층 아동”를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로 하며, 같은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
2. 학생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제4조, 제5조, 제7조 중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을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공자 및 진료범위)

1. 학생치과주치의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치료 등 구강건강관리이다.
2.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내용은 지역 협의체를 통하여 정한다.

제7조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대상 학생 및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제14조 중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주치의 지원을 제공하였거나”을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주치의 등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구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u> ----- ----- ----- ----- --.</p>
<p>제2조(정의)</p> <p>1. “ 저소득층 아동” 이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내 설치된 “아동복지시설” 에 등록된 아동을 말한다.</p>	<p>제2조(정의)</p> <p>1.----- ----- <u>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 에 등록된 아동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아동을 말한다.</u></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u>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을 위하여</u>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정책의 방향</p> <p>2.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 ----- ----- <u>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u>----- ----- ----- -----.</p> <p>(현행과 같음)</p> <p>1. <u>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u></p> <p>2. <u>학생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u></p>

제4조(지원대상)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대상은 보호
자 또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동
의한 학생이며 세부기준은 매
년 보건소장이 계획을 수립하
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지원액) 구청장은 저소득
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에 대
하여 일정금액을 예산범위 내
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공자 및 진료범위) 저소
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제공하
며 세부 내용은 제8조에 따른
협약체를 통하여 정한다.

제7조(의료비 신청)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제4조(지원대상) 학생 치과주치
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

제5조(지원액) ----- 학생 치과
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
지 ----- 원

-----.

제6조(제공자 및 진료범위) ①학
생 치과주치의는 지역 의료기관
에서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
검사,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치료 등 구강건강관리이다.
②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은 보
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
며 세부내용은 제8조에 따른 협
약체를 통하여 정한다.

제7조(의료비 신청) 학생 치과주
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
원 사업----- 의료기관이

-----.

1.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
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대상 아동의 이름, 생
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제14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
원대상이 아닌 저소득층 아동
에게 치과주치의 지원을 제공
하였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
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
여야 한다.

성명 및 주소

2. 지원대상 학생 및 아동의 이
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제 1 4 조 (환 수 조 치)

-----학생 및 저
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 등
의 료 지 원 을

-.